

보도자료

2011년 10월 13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
가. 전파정책기획과 박노익과장(2210) 나. 이용자보호과 박철순과장(2673)
다. 뉴미디어정책과 김정원과장(2450)

[보고안건]

가. 조사기획총괄과 최영진과장(2610)

2011년 제56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휴대인터넷(WiBro)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관한 건 (첨부 참조)

- WiB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(주)한국모바일인터넷(KMI)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("11.8.26.)을 하고 중소기업에서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, 휴대인터넷(WiBro)용 주파수 할당계획안과 관련 규정을 심의하여 의결함

나.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- 차기회의 재논의

다.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

- 올 3월 23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보조국 구축과 관련해 부과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춘천문화방송(주)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고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한 결과,

※ 시정명령 위반사항

- '11. 6월말까지 구축 완료해야 하는 5개 방송보조국 중 3개(태기산, 양양, 호산) 미구축

-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한 아래의 시정명령을 의결함

< 시정명령 >

◆ 태기산, 양양, 호산 등 3개 방송보조국을 '11.12월 말까지 준공 완료하고, 준공 완료 후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보고할 것

[보고안건]

가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방송의 공정경쟁 촉진과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법이 개정('11.7.14. 공포, '12.1.15. 시행)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- IPTV콘텐츠 관련 분쟁 및 전기통신설비 사용 관련 분쟁을 방송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
-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기준·절차 등 구체화
-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구체화,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

< 첨부 >

주파수 할당계획 주요 내용

가. 할당대상 주파수 : 2.5GHz대역(40MHz폭, 2575 ~ 2615MHz)

나. 할당시기 및 이용기간

- 할당시기 :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
- 주파수 이용기간 : 7년

다. 할당방법 및 최저경쟁가격

- 할당방법 :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가격경쟁(경매)에 의해 대가할당하며, 경매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

※ 경매 장소 및 세부진행방안 등 필요사항은 별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

- 최저경쟁가격 : 807억 원

라.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

- (주파수 용도) 휴대인터넷(WiBro) 서비스 제공용
- (기술방식) 3G WiBro 방식 또는 이후의 진화된 4G WiBro 방식

마.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

- 전파법 제13조(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
- 이동통신(IMT)·휴대인터넷(WiBro)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그와 「전파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

바. 추진일정

- '11. 10월 : 주파수할당 공고 (1개월)
- '11. 12월 : 주파수 할당(경매) 실시